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6월 21일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02호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 규정 일부 개정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3조의1(의원면직 제한) 대표이사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
2.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, 인사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